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원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 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② ~ ⑥ (생략)</p> <p>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생략)</p> <p><신 설></p> | <p>제4조(구성) ① -----</p> <p>-----</p> <p>-----</p> <p>-----</p> <p>-----.</p> <p><u>다만, 민간위원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u></p> <p><u>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u></p> <p><u>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u></p> |

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② (생략)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제10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

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전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
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전
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
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
의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
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
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
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
| 연 락 처 | (02) 2100 - 2805 |